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(안 제7조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시험설비,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비영리 기관 요건을 삭제하고,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·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안전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소요 기간 단축 및 인증서비스 질 제고 등 업계 편익 증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(안 제18조 개정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안전인증기관 영리기관 허용에 따른 행정처분, 안전확인신고 등 기존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행정처분,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인증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